

<알아두면 힘이 되는 도민 로스쿨>

빛도 상속이 된다 (상속법)



목 차

I . 유언	2
II . 법정상속.....	5
III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9
활동지	14
Quiz로 알아보는 법상식	17

[도입]

<신문 모양으로 구성>

어제 (21일)밤 9시40분쯤 부산 수영구 79살 김모씨의 집 안방에서 김씨가 장롱 모서리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못 보고 나갔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4개월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상실감을 호소했고 한주 전 아내의 유산 상속문제를 놓고 가족 다툼이 일어난데 대해 비관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김씨가 확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뉴스 2012-09-22 09:27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면서도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I . 유언

120억원대의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3년 가까이 벌인 ‘날인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연세대가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적고 날인해야 한다’며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사업가 김운초씨는 2003년 11월 사망 전에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 맡겼다. 경향신문(2006.9.13.)

■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 더 알아보기
내용증명
“한국인” p.316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함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에서 본 뉴스처럼,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유족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이 무엇인가요?

- 사망과 동시에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도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하나요?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날짜, 주소 등을 직접 적은 후 날인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Tip

- 유언 능력이란, 유언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는 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 민법에서는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정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 민법에서는 유언을 할 온전한 정신 능력이 있을 때 성립된 유언만이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합니다.

■ 한번 유언은 영원한 유언?



유언장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한 후라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민법 제1108조).



유언장이 여러 개입니다.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여러 개의 유언이 내용상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을 따릅니다(민법 제1109조).



강요에 의해 고인의 뜻과 다르게 작성한 유언장, 꼭 지켜야 하나요?

유언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이유없이 유언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유언을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이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해 작성 되었음을 증명하여 유언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어해설

사기: 고의로 망인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강박: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착오: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행위. 착각하여 잘못 판단한 행위

II. 법정상속

무책임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는 술과 도박을 즐겨 남긴 재산이 많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은 무책임의 홀어머니, 임신 중인 아내, 아들 하나가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전세 보증금 5천만원과 회사에서 받은 사망 퇴직금 2천만원이 전부이다.

상속재산에 관해 유언이 없을 경우, 또는 유언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법정 상속). 유언 없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무책임씨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될까요?

■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2. 제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3. 제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4. 제4순위: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그러나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고 살아서

태어난다면 그때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연고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됩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제1058조).

Tip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 사망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 사망한 사람을 돌보아준 사람, 사망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그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

예) 사실혼의 배우자, 입양신고는 없었으나 사실상의 양자, 사망한 자와 동거하고 있던 친척, 사망한 자가 장기간 도움을 받았던 요양소나 양로원 등

■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됩니다(민법 제1009조).

1.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2.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1.5배를 상속받는다.
3.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무책임씨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될까요?

1. 상속인은 1순위 직계비속인 아들과 태아(살아서 태어남을 전제),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2. 전 재산 7천만원을 아들: 태아: 배우자= 1:1:1.5의 비율로 나누면 아들 2천만원, 태아 2천만원, 배우자 3천만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을까?

법정 상속의 원칙에 따라 상속 되지만, 현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 기여분 제도

- 상속인 중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얼마를 보상할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상속 전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 이미 받은 재산이 자기의 법정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
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을 받고, 특별 수익이 상속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합니다(민법 제 1008조).

더 알아보기

<유류분제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
가요?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상속인을 위해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해요.

☞ 더 알아보기
내용증명
“한국인” p.316



누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1.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1/2
2.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3.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1/3
4.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

Ⅲ.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서민씨.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빚 때문에 서민씨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1억원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 빚도 상속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채권, 예금, 특허권처럼 가치 있는 재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 하세요.

■ 상속,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망자의 빚을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의 빚과 상속 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효과	승인여부
상속재산>빚	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	단순상속
상속재산≒빚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음	한정승인
상속재산<빚	상속재산을 포기, 빚도 갚지 않음	상속포기

Tip 상속자에 대한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 등에 대하여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csc.kr>)

1. 신청서류

① 상속인 직접신청의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 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것).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조회 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 등

3. 조회 절차

- 금융감독원이 조회 신청서 접수 → 각 금융 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하여 금융협회에 통보 → 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 상이함)

5. 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1332
-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 02-3705-5393



한정승인은 이렇게!

-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더 알아보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한국인” p.324



상속포기는 이렇게

-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합니다(민법 제1030조).

-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합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하려고 할 때 유의 하세요!

<사례1>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슬픔에 빠져 산속으로 숨어버린 귀찬. 그의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채권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집에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가족들을 괴롭히는데... 가족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귀찬은 3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 합니다.

<사례2>

아버지 사후 상속 포기 신고 전, 상속 재산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상속 포기 신고를 하려고 한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슷한 경우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이후에 알면서 재산 목록에 상속 재산을 적지 않는 행위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활동지

1. 유연장 작성하기

·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유연장을 작성해 봅니다.

(유연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유 언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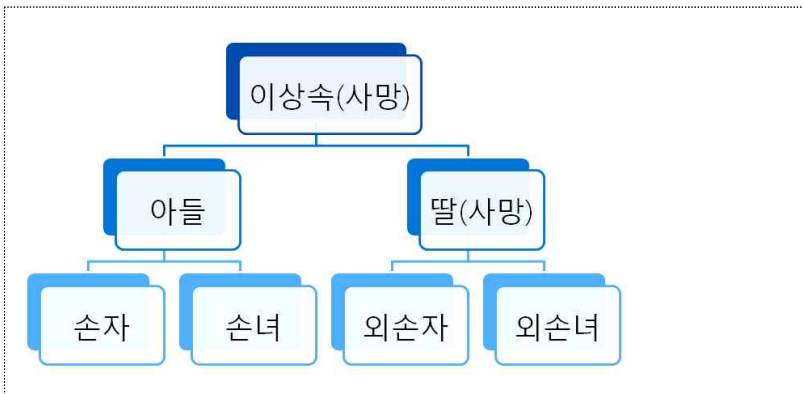
2. 법정 상속

무책임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는 술과 도박을 즐겨 남긴 재산이 많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은 무책임의 홀어머니, 임신 중인 아내, 아들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전세 보증금 5천만원과 회사에서 받은 사망 퇴직금 2천만원이 전부이다.

1)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2) 각각 얼마나 상속 받나요?

3. 대습 상속



1) 이상속의 사망 후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딸은 이상속 보다 먼

저 사망한 상태)

2) 각각 얼마나 상속 받나요? (전 재산 4억)

4. 유류분 계산하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1억원을 남겼습니다. 큰 아들에게 8천만원, 딸에게는 2천만원. 그런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미 큰 아들에게 5천만원, 딸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살짝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겠지요? 오빠는 상속도 많이 받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집산다고 5천만원도 보태주고 말입니다. 부당함을 느낀 딸이 유류분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 일까요?

1) 아버지의 총 재산이 얼마 인가요?

2) 아들, 딸의 법정 상속분은 얼마 인가요?

3) 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QUIZ로 알아보는 법 상식

1. 다음 문장을 읽고, OX로 표시하세요.

1) 유언이 법정 상속에 우선한다.

2) 유류분 청구: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

상속포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2. 자필 증서 유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름	날인	확정일자	유언내용	증인	공증인
	주소	작성일자	법원의 검인절차		

답안지(별도 작성)

1. 유언장 작성하기

- 유언내용, 이름, 날인, 주소, 날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2. 법정 상속

1) 아내, 아들, 태아

2) 아내 3천, 아들2천, 태아 2천만원 상속 (태아는 살아서 태어남을 전제)

3. 대습상속

1) 아들, 외손자, 외손녀

2) 아들 2억, 외손자 1억, 외손녀 1억

(외손자, 외손녀는 사망한 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

4. 유류분 계산

1) 총 1억 6천만원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1억과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얻은 재산 6천만원)

2) 법정 상속분은 아들, 딸 각 8천만원

3) 유류분은 아들, 딸 각 4천만원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유류분은 각각 4천만원)

(참고) 아들은 총 1억 3천만원을 받게 되므로 유류분 이상을 받으니 상관 없지만, 딸은 3천만원을 받게 되어 유류분보다 1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 큰아들이 여동생에게 1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여동생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법대로 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대로 해야만 하는 것!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법률구조 신청대상자

- 1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2 다문화가정 · 이주외국인 · 국제법상 난민
- 3 북한이탈주민
- 4 성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
- 5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 7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 법률구조 신청절차



▶ 법률구조 대상사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건. (단,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률구조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법률구조 비용

재단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대체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료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사건종료결과 등에 따라 상환여부가 결정되는데, 승소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 패소한 사건, 형사사건(합의된 사건은 제외), 비용의 상환이 불가능한 사건은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4 (역삼동 823번지) 풀림빌딩 14층 (우135-784)
전화 : 02-3476-6515, 02-3476-6511 | 팩스 : 02-3476-6512
홈페이지 : www.legalaid.or.kr

